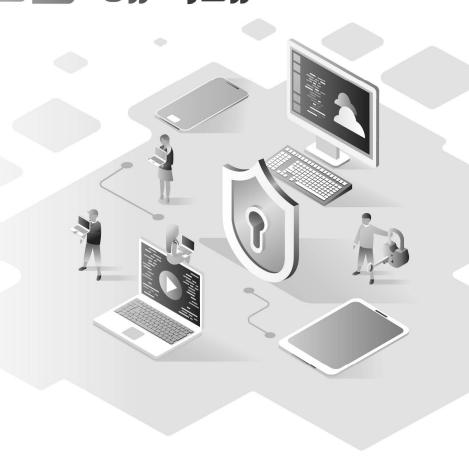
#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 CONTENTS

번호	제목	조별	분야	페이지
1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	§2 1호	공동주택	1
2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2 1호	인사노무	3
3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인지?	§2 1호	제도일반	4
4	차량사고 기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6	영상정보	5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전체동의 처리해도 되는지?	§15 ① 1	제도일반	6
6	타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대신 받아도 되는지?	\$15 ① 1 \$39 <u>9</u> 3 ①	온라인 플랫폼	8
7	공동주택 입주민의 찬반투표 연명부에 성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15 ① 1	공동주택	9
8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15 ① 6	공동주택 영상정보	11
9	입주민 주차 관련 설문조시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15 ① 1	공동주택	12
10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15 ③	제도일반	13
11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경력증명 발급에 이용해도 되는지?	§15 ① 2	인사노무	14
12	판결문 원본을 공동주택 게시판에 게시해도 되는지?	§17 ② 2	공동주택	15
13	보험회사가 자문받으려는 의료기관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지?	§17 ②	제도일반	16
14	조합에서 받은 조합원 명부를 다른 조합원과 공유해도 되는지?	§18 ② 2	공동주택	17
15	강제 탈퇴시킨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는지?	§39º46 ①	온라인 플랫폼	18
16	스마트폰에서 인증한 지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23	온라인 플랫폼	19
17	회사에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24 <u></u> 2	인사노무	20
1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시적으로 음성 녹음을 하여도 되는지?	§25 ⑤	영상정보	21

번호	제목	조별	분야	페이지
19	개인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해도 되는지?	§25 ⑦	영상정보	22
20	직원의 연수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개인정보 위탁인지?		인사노무	23
21	중소기업이 규모가 큰 수탁자를 감독할 수 있는지?	영 §28 ①	제도일반	25
2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책정하는 기준 가이드가 있는지?	§32	제도일반	26
23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39의12 ②	온라인 플랫폼	27
24	아파트 우편함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경우 CCTV를 볼 수 있는지?	§35 ①	영상정보	28
25	열람을 거쳐야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36 ①	제도일반	29
26	여러 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위임장을 건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38 ①	공동주택	30
27	면접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지?	§18 ①	인사노무	31
28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자의 업무용 PC를 점검해도 되는지?	§18 ①	인사노무	32
29	동창회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58 ③	제도일반	33
30	친구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59	제도일반	34

## 「개인정보 보호법」표준 해석례

- 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개정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일반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표현이 일부 생략**된 경우가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법'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정)보호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20.12)」는 '해설서'로 약칭합니다. 해설서는 기타 지침 등과 함께 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법령·정책〉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1

####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

- (문의) 배송업체에서 물품을 배송시킬 때 배송 주소와 함께 공동현관 출입 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로 봐야 하나요? 만일, 아파트 입주민 개별로 즉, 호수마다 다르게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공동현관의 출입번호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별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르면, 세대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동현관의 출입번호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별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필요함

#### 인사노무



####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 (문의) 기업용 OFFICE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관리자는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이 처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건수, SNS 전송, 전자 메일 보내기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생산성 점수로 직원의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OFFICE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생산성 지수를 도출하여 직원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함
  - 한편,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음(해설서 10쪽)
  -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 지수 및 이를 구성하는 건수를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로 볼 수 있으나, OFFIC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된 개인의 작업일시 및 소요시간, SNS, 메일 등의 문체 및 작성성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생산성 지수화하여 직원을 모니터링하고 평가에 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인지?

- (문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성명, 전자우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가상자산 지갑주소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가상자산 지갑주소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거래계좌, 이름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함
  -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 선고2020도9789 판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그러나 현재 거래를 생성한 지갑주소와 IP주소를 연계할 수 있을뿐더러, 가상자산과 교환되는 금전의 입출금거래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허용됨
    - \* 동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 따라서, 당해 거래소가 이행한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거나 연계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명의자 정보와 결합하여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위 2022. 7. 13. 의결 제2022-110-023호)

#### 영상정보



## 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문의) 민원인이 차량사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민원인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 스스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보호법의 영상 열람 제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정보주체 자신의 영상만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제35조) 영상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마스킹 등 비식별조치를 해서 제공해야 하고,
    -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18조 제2항)
  - 다만, 보호법 제6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법보다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보호법보다 정보 공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피해 민원인이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신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공 여부 및 제공 범위를 결정하되,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체크박스를 전체동의 처리해도 되는지?

- 【문의】 저는 온라인쇼핑몰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주문서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타사 사례를 보면 전체동의 체크박스를 두던데 가능한지요?
- (답변) 수집·이용, 제공, 홍보 및 판매,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내용이 체크 박스로 구분되는 경우 전체동의 처리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그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그 어느 하나의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이러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개정 보호법 제22조 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즉 항을 달리하여 각각 체크박스를 두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체크박스별로 동의 내용이 구분되어 설명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전체동의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동의를 받을 때 체크박스에 동의의 디폴트값을 부여하여 자동적으로 동의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 참고

## 온라인 플랫폼



## 타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대신 받아도 되는지?

- (문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의 A 시스템에 수집된 회원의 개인 정보를 거래 회사의 C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A 시스템은 C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중간에 중개회사의 B 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A 시스템의 회원들에게 B 시스템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다면, 데이터 전달이 가능할까요?
- (답변)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려는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알리고 동의받아 처리할 수 있음
  - 보호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에 필요한 사항(위 5번 참조)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그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또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A)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B)와 해당 정보를 제3자 B로부터 제공받는 자(C)를 포함하여 알리고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음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입주민의 찬반투표 연명부에 성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 (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할 경우 투표 양식에 동호수, 성명, 서명, 찬성, 반대란이 있습니다. 성명란에 성명을 기재 하는 것이 보호법 위반인가요?
- (답변) 서명란 옆에 수집·이용·제공 동의란을 만들어 입주민이 성명 수집 등에 동의를 표시하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입주민의 찬반투표 연명부를 게시하거나 통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서명을 받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성명, 동호수, 찬반여부 등의 의견에 대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란을 만들어 입주민이 동의를 표시하도록 해야 함
    - 다만, 입주민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 시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란만 보이도록 가림장치(보호슬라이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일, 세대별로 찬반투표를 한다면 성명을 수집할 필요성이 적으나, 투표의 진위 확인 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찬반투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명을 기재한 것만으로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① **보호조치**: 연명부 상단에 '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문구를 삽입

② 작성목적 :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를 기재

③ 정보주체 동의 :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칸 마련

#### ○○○ 주민의견 수렴 연명부

- ※ 본 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본 연명부는 우리 단지 도색 색상 의사결정에 반영할 목적이며, ○○○ 시·군·구에 우리 단지의 지원요구를 위해 제공 예정임

연번	성명	동 호수	서명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

#### 공동주택, 영상정보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 **(문의)**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직원에게 폭언하는 경우 녹음·촬영 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나요?
- (답변) 폭언·폭행의 위협에 대한 자제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한다면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을 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한편, 개정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에 따르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집 및 정보주체가 촬영 동의를 구하는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촬영 및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 ※ 다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위반할 수 있음
  - 공동주택 내 입주민 및 방문객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먼저 자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도록 안내함 (고용노동부,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20.7)」)

#### 공동주택



## 입주민 주차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 (문의) 아파트 주차문제로 인해 주차위원회가 입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입주민을 상대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 -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제16조 제1항)
  - 차량관리업무의 경우 동·호수와 같이 입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차량번호 등 등록할 차량에 관한 정보, 주차관리 시 필요한 긴급연락처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함



##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문의】 고객이 가게에서 계산한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고객이 실수로 그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가게주인이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해서 물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 **!!!** (답변) 가게주인은 고객에게 연락하여 물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 보호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인이 구매하려고 계산한 물건이 아님에도 착오로 계산대에 놓인 물건을 잘못 가져간 고객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행위는 '당초 수집목적'인 구매계약과 관련성이 있고,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물건을 잘못 수령했을 때 고객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은 고객 관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해당 상품을 반환하더라도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음
  - 따라서 구매계약 체결 및 이행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물건의 반화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인사노무



####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경력증명 발급에 이용해도 되는지?

- (문의)「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6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정한 사항을 위해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퇴사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나,그 외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음
  -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제39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9조에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나, 퇴사자가 요구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 정보는 퇴사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음

## 공동주택



## 판결문 원본을 공동주택 게시판에 게시해도 되는지?

- (문의) 법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통보한 과태료 불처분(기각) 결정문(판결문)에는 입대의 회장, 관리주체 대표자, 판사 성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문을 아파트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할 경우 보호법에 위반되는지요?
- (답변) 과태료 불처분 결정문의 성명은 개인정보로서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음
  -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 등록번호·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음(해설서 10쪽)
  - 이에 따르면, 과태료 불처분 결정문에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주체 대표자, 판사 성명 등은 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으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주체 대표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자문받으려는 의료기관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지?

- (문의)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으나 해당 동의를 받을 때 자문을 의뢰하는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의사명에 대해서는 알려 주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및 제3자의 유형 등으로 알릴 수 있음
  -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동항 제1호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을 때 동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보험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함
  -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특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 및 제3자의 유형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음(「알기쉬운 개인 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
    -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함(「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

## 공동주택



## 조합에서 받은 조합원 명부를 다른 조합원과 공유해도 되는지?

- (문의)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조합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조합원 명부'를 수령 하였습니다. 이를 다른 조합원에게 전달하여 함께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 (답변)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명부를 다른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제3자와 공유하면 보호법에 위반함
  -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조합원에게 명부를 열람할 자격을 부여하였고, 제6항에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목적 내용도로 이용·활용할 수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조합원 간 명부를 공유하는 것은 보호법상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지 않음
  - 다만,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명부를 공유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가 적용되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온라인 플랫폼



## 강제탈퇴 조치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는지?

- (문의) 1년간 미접속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파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해당 미접속자가 이전에 앱 내에서 구매한 재화(앱을 사용하기 위한 포인트)가 남아있다면 파기에 문제가 되는지요?
- (답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파기하지 말고 보관하여야 하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하여야 함
  -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하여서 저장·관리하도록 함
  - 따라서, 고객이 앱 내에서 구매한 포인트 등 거래내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간 파기하지 않고 분리 보관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에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 기록은 5년 보관을 규정
    - ※「국세기본법」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2항에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토록 함

## 온라인 플랫폼



## 스마트폰에서 인증한 지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 【문의】정보주체의 지문정보를 추출하여 이용하려면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이 정보주체의 지문정보에 접근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본인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값만 제공받는 것도 민감정보 이용에 해당하나요?
- (답변) 스마트폰에 내장된 지문으로 본인확인한 결과값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값 이용은 일반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함
    -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출한 지문, 홍채, 정맥, 안면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이용하려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의항목과 다른 별도의 항목에 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내용을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정보주체가 스마트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필요할 때 지문을 입력하여 본인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만 하고 스마트폰이 결과값으로 예, 아니오만 제공한다면 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앱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 민감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인사노무



## 회사에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 (문의) 회사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를 강요받았습니다. 퇴사이후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개인 신상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년월일 말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회사가 수집할 수 있나요? 보호법위반 아닌가요?
- - 보호법 제24조의2에서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제4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회사가 단체보험 가입을 위하여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보험업법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4호, 「상법」제735조의3에 근거)하는 것은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기업이 해당 입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함

#### 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시적으로 음성 녹음을 하여도 되는지?

- (문의) 민원실 응대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개방된 민원실 내 폭언이나 욕설, 폭행 발생으로부터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또는 우려 시 민원실에 설치된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답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녹음하는 행위는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보호법 제25조에 위반됨
  -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면 보호법에 위반함
  -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할 수 있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호)

#### 영상정보



## 개인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해도 되는지?

- (문의) 범죄를 신고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이 필요한데, 보관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어 경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파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범죄 행위의 영상을 30일이 지나도 볼 수 있도록 따로 복사하여 보관하여도 괜찮은가요?
- (답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보존요청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별도 보존할 수 있음
  -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는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포함하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CCTV 설치 목적 등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관기간, 추가 보관사유·보관기간 등을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마련하여 공개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이해 관계자의 보관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간 동안 별도 보관할 수 있음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 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함(법 제21조 제3항)

#### 인사노무



## 직원의 연수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개인정보 위탁인지?

- 【문의】당사는 직원이 직접 금융연수원(또는 직원이 원하는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업체)에 회원가입하여 듣고 싶은 과정 연수 신청하면, 인사실 연수 담당자가 연수 신청내역 확인 후 연수비용 결제의 방법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연수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해당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위·수탁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용역 구매로 볼 수도 있음
  -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수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회사가 직원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수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가 직원의 명단을 사전에 연수원에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의 관계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회사가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연수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거나, 직원이 납부한 금액을 개인별 정산하는 경우 단순히 연수원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 회사에서 소요 비용을 지원해주는 관계로 볼 수 있음
  - 위·수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연수원은 수탁자로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수원은 시설을 이용한 회사 직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한편, 위·수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수탁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업무위탁의 유형은 크게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수반되는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탁한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됨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 13263판결)
- ※ 자세한 사항은 해설서 204~212쪽을 참고하시고 또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202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이 규모가 큰 수탁자를 감독할 수 있는지?

- (문의) 중소업체로서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위·수탁 계약서에 수탁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작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감독 사항을 작성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답변) 수탁자 관리 방법에는 전문기관(관련 협회,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대행, 원격점검, 솔루션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려면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함(보호법 제26조 제4항)
  - 위탁자의 수탁자 관리 방법에는 전문기관(관련 협회,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대행, 원격점검, 솔루션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2020.12)」를 참고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책정하는데 기준 가이드가 있는지?

- (문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일반 회사에 대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는 새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정하는 데에 참고할 가이드가 있을까요?
- - 보호법 제16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장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별표 1호]에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가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민간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책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음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안내함
    -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의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 회원 탈퇴 시까지, ②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 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③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의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완료·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로 정할 수 있으며, ④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를 추가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에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대금 결제·재화 등의 공급 기록은 5년 보관을 규정

## 온라인 플랫폼



##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입니다. 고객과의 커뮤니티 및 교육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부분을 신규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할 경우 기존 및 신규 이용자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해야 하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의 경우 공개 또는 알림으로 갈음
  - (개정)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법률, 조약,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린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국외이전 할 수 있음
  - 제28조의8 제2항의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 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 영상정보



## 아파트 우편함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경우 CCTV를 봐도 되는지?

- (문의) 누군가 저희집 우편함에 쓰레기를 반복적으로 투척하고 있어 범인을 찾고 싶습니다. 누구인지 알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파트 CCTV는 보호법 때문에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경찰서에는 뚜렷한 범죄사실이 없어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계속 당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 (답변) CCTV는 정보주체 본인과 관련된 영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하여야 함
  -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입주민이 CCTV를 열람하려면 정보주체인 본인과 관련된 내용만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쓰레기 투기자의 CCTV를 열람하려면 모자이크 처리 등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후 열람할 수 있음
      - ※ 한편,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에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 ◆ CCTV 영상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열람을 거쳐야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문의) 저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공공기관이나 민간회사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열람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열람을 거쳐야 하며, 처리 정지, 동의 철회는 열람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함
  - 보호법 제4조 제1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 목적과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1항은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따라서, 정정·삭제 요구는 반드시 열람을 거쳐야 할 수 있으며, 제37조의 처리정지, 제39조의7의 동의의 철회는 열람을 거치지 않고 요구할 수 있음

#### 공동주택



## 여러 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위임장을 건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 (문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비 납부내역 등을 열람, 복사 진행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하려 합니다. 당일 여러 건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도 건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여러 건에 대해 한 장의 위임장으로도 처리 가능한지요?

#### **!!** (답변) 한 장의 위임장으로 여러 건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시킬 수 있음
-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의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받아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함
-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하나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반드시 한 장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법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여러 건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와 대리인의 권한을 정하였고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표현한다면 한 장의 위임장으로 여러 건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인사노무



## 면접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지?

- (문의) 면접대상자에게 면접 일정을 통보하고 채용심사를 진행하나 연락도 없이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불참하는 구직자에게 향후 동일한 채용공고 시 서류심사 점수를 감점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보관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구직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당 개인정보를 면접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보관할 수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직자의 채용서류는 180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파기해야 하고.
    -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업자는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해당 채용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채용절차가 아닌 향후 채용절차에서의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채용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구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개인정보가 향후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으면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인사노무



##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예정자의 업무용 PC를 점검해도 되는지?

■ (문의) 퇴직 예정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PC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퇴직 처리가 불가하도록 조치할 목적으로 회사가 PC를 동의 없이 점검할 수 있나요?

## ₩ (답변) 퇴직 예정자의 동의 없이 PC를 점검할 수 없음

- (PC 열람)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 비록 퇴직 예정자가 사용한 PC가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범죄 혐의 등 사유가 분명하고, 업무 관련 결과물에 해당해야 하며, 회사가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 해당 퇴직 예정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퇴직 예정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한 PC를 열람할 수 없음
    - ※ (판례) 직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열람을 제한하였으며, 사전에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는 약정이 있었으며, 검색 결과 범죄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회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았음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6243 판결)



## 동창회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 **(문의)** 동창들 간에 회원 명부를 공유할 목적으로 총동창회원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답변) 동창회가 동창 명부를 발간하면서 동창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동창들의 동의가 필요함
  - 전화번호는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 보호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 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30조,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동창회 회원 간에는 전화번호를 공유할 수 있으나 동창회의 회원 명부에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인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친구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 **(문의)** 공무원이 민원 업무상 취득하게 된 민원인의 방문사실,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친구에게 전달한 행위가 보호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나요?
- -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으로 제71조 제5호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기획 및 집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여진** 심사총괄담당관

유영관 심사총괄담당관 사무관

김현경 심사총괄담당관 사무관(변호사)

**박은지** 심사총괄담당관 주무관

**박재윤** 심사총괄담당관 전문연구원

## 2023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공 개 일 2023년 7월

공 개 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www.pipc.go.kr

상 담 문 의 ☎ 02-2100-3043